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70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김종민 · 김승원 · 이성운
강준현 · 위성곤 · 용혜인
박균택 · 허성무 · 최혁진
권향엽 의원(10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전환(AI)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업무 환경 전반을 재설계하고 혁신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지점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한 원천인 데이터의 생성 및 확보, 활용 차원에서 주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반 부족, 지원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소외되어 있음.

우리 국가 경제의 근간과도 같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없이는 인공지능의 발전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의 저하가 예상되는 바, 법률로써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집중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공지능과 제조업 생산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제·투자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제10조).
-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 아.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훈련 및 학습 목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6조).
-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 선정 시 인공지능 기술정보를 공개·공유하는 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우대할 수 있음(안 제17조).
-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활용·가공하기 위해서 학습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에 데이터 구축 인력의 양성·육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로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22조).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5. “인공지능 전환”이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전반적인 사업 활동에 인공지능을 도입·융합·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인공지능 중소기업”이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7.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8.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9. “합성데이터”란 컴퓨터 프로그램과 알고리즘 등을 통하여 실제 데이터를 모방하여 생성된 가상의 데이터를 말한다.

10. “인공지능 솔루션”이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시스템·소프트웨어·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말한다.

11. “학습데이터”란 인공지능 시스템의 학습·검증·성능개선을 위하여 사용되는 데이터로, 데이터의 생산·수집·정제·라벨링·검증·평가 등의 단계에서 인간의 판단과 노동이 개입되어 구축된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과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을 조정하

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 및 정비, 규제 및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보급, 시설투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창업, 성장,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데이터 생성·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데이터·영업비밀 보호 및 윤리·책임기반 운영 지원 방안
 9.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가치체계 정립
 10.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권고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소기업 및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예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을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중소기업 전환 지원 활동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자할 수 있다.

제3장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제8조(인력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 제10조 및 제35조의5 각 호의 사업을 인공지능 중소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도입 및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0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자금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을 도입 및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금융·세제·투자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 전용 특례보증·금리우대 상품 개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제지원을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 인공지능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및 전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4. 인공지능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 전용펀드 조성, 민간투자 연계 등의 투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기준·지원범위·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공지능 기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및 초기운영자금 지원
2.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매칭·공동사업화 지원
4.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지원범위·절차·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외시장 진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 기업 또는 해외 기관과 협력모델 개발 등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공동기술 개발
2. 해외 공동시장 개척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인공지능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 및 유치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 지원

제1절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공급

제13조(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전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2. 인공지능 제품 및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비용 지원
3. 인공지능기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제14조(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 전환 지원
2. 소상공인 인공지능 제품 및 인공지능 솔루션 등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 및 인프라 지원
3.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 및 활용

제15조(데이터 확보 및 품질향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인공지능 전환에 필
요한 데이터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결합과 합성데이터의 생성·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품질 향상·가공·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시스템의 효과적인 훈련과 학습을 위한 데이터 관련 기
술의 개발 및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암호화 등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의 기술적 조치 등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데이터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공공데이터의 개방 촉진) ①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훈련 및 학
습 목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
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

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신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거부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술적, 법률적 사항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중소기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오픈소스 기반 협력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정보를 공개·공유하는 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방형 인공지능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프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학습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활용·가공하기 위하여 학습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에 데이터 구축 인력의 양성·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2. 대학, 전문대학, 연구기관 등
 3. 인공지능과 관련한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습데이터 구축 과정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 적절한 보상, 표준계약의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범위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인공지능기술 ·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제19조(고영향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한 지원,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규제개선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로 인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를 신속하게 신청·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규제특례 신청·협의·심의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부처 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협의·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역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의 조성

제21조(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 및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연계 지원
3.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컴퓨팅, 인프라 공동 활용, 테스트 환경 제공 등을 지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지역별 인공지능 혁신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센터(이하 “인공지능 혁신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
3. 대·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중소기업 인공지능 데이터의 생성 및 합성, 공유 및 거래 지원
5. 제8조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6.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8. 제18조의 데이터 구축 인력의 지원과 관련한 업무
9. 그 밖에 인공지능 혁신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과 인공지능 혁신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혁신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혁신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인공지능 혁신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혁신센터에 입주하여 인공지능 산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하여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인공지능 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실증시설 등 연구시설·장비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제6장 보칙

제24조(지식재산·데이터·영업비밀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데이터·영업비밀의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저작권, 기술 오용 방지, 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2. 지식재산·데이터 보호 관련 교육·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3.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조사 및 구제 지원체계 구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절차 및 협력체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 및 지원 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인공지능 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해당하

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 및 지원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16조의 공공데이터의 개방 촉진 등 이 법에 따른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 인공지능 혁신센터 임직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